정 정 신 고 (보고)

2026년 11월 1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삼성클래식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제1호[채권혼합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4. 17

3. 정정사유
- 전환형 연결펀드 명칭 변경(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 → 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)
-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

4.정정요구·명령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조 (정의)	6. “ 전환” 이라 함은 __ 있다. 나. **삼성 클래식인덱스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**	6. “ 전환” 이라 함은 __ 있다. 나. **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**
제6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	④신탁업자는__감시업무, **(추 가)**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.	④신탁업자는__감시업무, **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,**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.
제7조 (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)	**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판매회사가 법령·신탁계약·투자**	**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, 일반사무관리회사, 집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	**투자기구평가회사(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**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제8조 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)	**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 )원으로 하고**,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권(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" 수익증권"이라 한다)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	**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1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며,**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권(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" 수익증권"이라 한다)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제19조 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)	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**대차대조표**상에__공고한다.	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**재무상태표**상에__공고한다.
제37조 (투자한도)	①집합투자업자는__투자·운용한다. **4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.**	①집합투자업자는__투자·운용한다. **(삭 제)**
제38조 (운용 제한)	**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2호본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**	**(삭 제)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**1.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** **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** **3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** **4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** **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** **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**	**(삭 제)**
제39조 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 포함)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**투자신탁재산으로**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**(추 가)**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 포함)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**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**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**법 제64조제1항에 따라**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0조 (투자신탁보수)	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 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**대차대조표**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 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**재무상태표**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제42조 (투자신탁의 해지)	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**(추 가)**	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**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	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제48조 (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__작성하여야 한다. 1. **대차대조표**	①집합투자업자는__작성하여야 한다. 1. **재무상태표**
제50조 (투자신탁의 합병)	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**대차대조표**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	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**재무상태표**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제51조 (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__통보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**(추 가)**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**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,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**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**(추 가)**	①집합투자업자는__통보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**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**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**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** **가.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** **나.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** **다.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** **라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**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**(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·게시 하는 경우에 한한다)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(추 가)	11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)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,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(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), 지상권·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,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
	11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	④**제2항 및 제3항의** 규정에 의하여 **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**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**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**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**(추 가)**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**및 제3호**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	④**제2항의** 규정에 의하여 **자산운용보고서를**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**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**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**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**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**(삭 제)**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	(추 가)	**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**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		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부칙	추 가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. (전환형 연결펀드 명칭 변경,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)